

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
「세제 부문」 주요 대책

'08. 6. 8

기획재정부

세제	
I. 주요 대책	
1.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	1
2. 대중교통·물류 및 농어민 지원	5
3.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	8
4. 난방용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	10
5.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	11
II. 향후 추진 일정	
12	
III. Q&A	
13	
〈계산사례, 지급방식 등 상세 설명〉	

I. 주요 대책

1.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(조특법 신설)

(1) 도입 취지

-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% 수준*을 유가 환급금으로 보전(유류비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와 개인이 나누어 부담)

* 중저소득층(1~3분위) 월 교통비 증가액(4만원)의 50%
(1개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비용 : 약 4만원)

(2) 지급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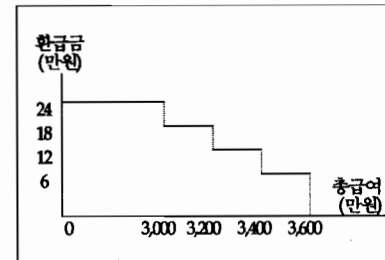
- 근로자 : 980만명(전체 근로자 1,260만명의 78%)
 - 총급여 3,000만원 이하(900만명) : 전체 근로자의 72%
 - 총급여 3,600만원 이하(80만명) : 전체 근로자의 6%
- 자영업자 : 357만명(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%)
 - 종합소득금액 2,000만원 이하(390만명) : 전체 자영업자의 85%
 -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(10만명) : 전체 자영업자의 2%
 -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 ('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)
 - ※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, 감가상각비,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
- '08.7.1 ~ '09.6.30기간중 근무(영업)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
 - * 면세자의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경우 지급

(3) 지급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및 지급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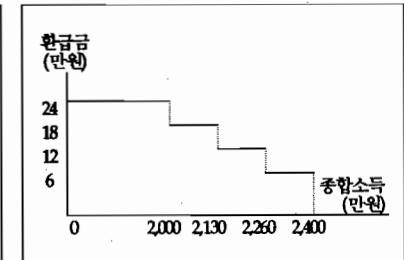
- 원칙적으로 2007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
 - 2008년도 연간 소득수준은 '09.9월경 최종 파악이 가능
→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'07년 소득기준 적용이 불가피
- 지급금액 : 소득에 따라 24만원 ~ 6만원 차등 지원
 - (근로자)
 - ▶ 총급여 3,000만원 이하 근로자 : 24만원 지급
 - ▶ 총급여 3,000만원~3,600만원 근로자 :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 (18, 12, 6만원)
 - ▶ 총급여 3,600만원 이상 근로자 : 지급 없음
 - (자영업자)
 - ▶ 종합소득금액 2,000만원 이하 : 24만원 지급
 - ▶ 종합소득금액 2,000만~2,400만원 : 3개 구간으로 감액 지급 (18, 12, 6만원)
 - ▶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상 : 지급 없음

< 유가 환급금 지급 개요 >

근로자 유가 환급금



자영업자 유가 환급금



(4) 지급 시기

- ① 근로자 :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
 - 금년 하반기분 : '08.9월 신청, 10월 지급
 - '09년 상반기분 : '09.3월 신청, 4월 지급
 -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'08.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
- ② 자영업자 :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
 - 금년 하반기분 : '08.11월 신청, 12월 지급
 - '09년 상반기분 : '09.5월 신청, 6월 지급

(5) 지급 절차

- ① (근로자)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('08.9월, '09.3월),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
 -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
 - * 신청서 기재사항 : 근로자명, 주민등록번호, '07년 총급여액, 계좌번호, e-mail, 연락처 등
- ② (자영업자)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('08.11월, '09.5월),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
 -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

(6) 기타 사항

- ①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환급금 우선지급
 - 유가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 및 압류 금지
- ②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급
 - 다만, 1년에 2회 지급받는 자가 금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'09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도 1년분을 모두 지급
 - 신청방법 :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신고도 허용
- ③ 과다 지급된 경우 추정문제
 - 과다환급자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추징
 - 한시적 특례제도임을 고려하여 이자상당가산세는 미부과

2. 대중교통·물류 및 농어민 지원(교통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)

(1) 도입 취지

-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농어민에 대해 현행 보조금외에 일정 수준이상 경유가 상승분의 50%를 유가연동 환급금으로 추가지원

* '07.12월말~'08.5월말 기간중 유가상승률 : (경유) 30%, (휘발유) 15%, (LPG부탄) 10%

(2) 지급대상

① 경유사용 운송사업자

- 영업용화물차(337천대), 버스(시내·시외·고속·마을버스, 49천대), 연안 화물선(2천대)

② 경유사용 농·어민

- 경유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(농민 125만명, 어민 7.7만명)

(3) 기준가격 : 1,800원/ℓ

- 설정근거 : '08.5월 평균 경유가격(1,768원/ℓ) 및 '08.5.4주 가격(1,877원/ℓ)수준을 감안하여 설정

(4) 지급규모 : 기준가격 대비 유류가격 상승분의 50%

- 경유가격이 기준가격(1,800원/ℓ)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

※ 유류가격 : 대한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시·도별 평균 가격 사용

(5) 지급 상한선 : 유류세액의 100%

① 설정 근거

- 국가가 징수하는 경유 세금(476원/ℓ)한도내에서 지급

② 유가연동 환급금 신규지원 상한금액 : 183원/ℓ

- 운송사업자 : 기존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(293원/ℓ)과 유가연동 환급금의 합이 유류세의 100%(476원/ℓ)가 될 때까지 지급
- 농어민 : 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상한기준 적용

(6) 지급 시기

- ①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: 카드결제 대금 청구시 ℓ당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됨

-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지급,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즉시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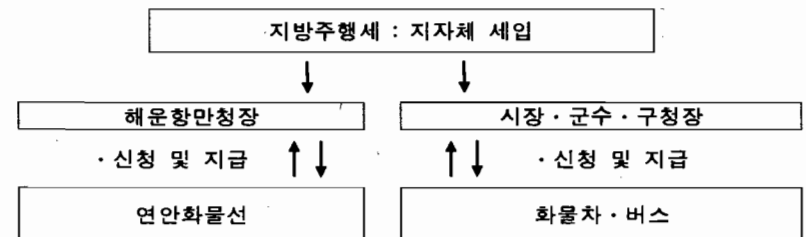
- ② 사후환급제의 경우 : 현행과 같이 매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(연안화물선은 해안항만청)에 신청하여 지급

(7) 지급 방식

- ① 화물차·버스·연안화물선 :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활용

- 화물차·버스 : 시·군·구에서 지급
- 연안화물선 : 해운항만청에서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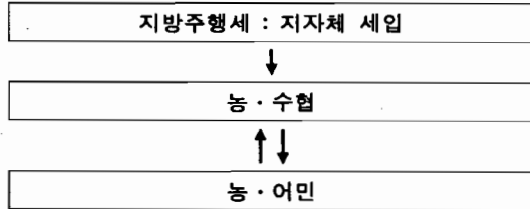
<화물차·버스·연안화물선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절차>



② 농어민

- (농민) 농협에서 지급, (어민) : 수협에서 지급

〈농·어민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절차〉



[8] 지원 규모

- 지급기간중 경유가격 변동에 따라 총 지급규모는 크게 달라지게 되어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
- 제도시행기간('08.7~'09.6) 중 월평균 40원/ℓ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지급규모는 약 1.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
- 기존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원액 19,560억원은 별도

〈 '08.7 ~ '09.6월간 평균가격에 따른 지원규모 변화 〉

평균가격(원/ℓ)	1,900	2,000	2,100	2,177
총지원규모(조원)	4,777	9,602	13,550	14,955

[9] 추가 예비조치(Contingency Plan)

- ① 발동요건 : 경유가격 상승으로 유가연동환급금이 유류세액의 100% 수준(476원/ℓ)에 도달하는 경우
 - 기준가격을 1,800원/ℓ로 하는 경우 경유가격이 2,166원/ℓ 수준(Dubai 유가 170% 수준) 도달시 발효
- ② 주요 내용
 - ① 수송용 유류(휘발유·경유·LPG부탄)에 대한 유류세 인하
 - ※ 유류세가 인하되어도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
 - ②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(택시 등)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

3.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(조특법§111의2)

현 형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1,000cc미만 경차 사용자에게 대해 유류세 환급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: 경형 승용차·승합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한도 : 연간 1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: '08.5.1~'09.12.31	<input type="checkbox"/>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: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한도 : 좌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: '08.10.1~'09.6.30 ※ 위 기간중 1회만 지급

〈개정 이유〉

-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서민·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,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t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지원 필요

〈지원 내용〉

- 지원 대상 :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(약 260만명)
-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(연 24만원) 수혜자에 대하여도 지원

* 상세 요건

- : ①개인소유(법인 제외)
- ②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이하일 것
- ③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대해서만 환급

○ 지원 한도 : 연간 10만원 한도

* 유종별 환급액 : 주유시 ℓ당 휘발유·경유 300원, LPG 147원

○ 지원 방식 :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환급

*** 상세 절차**

- : ①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 발급
- ② 환급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할인가격으로 구매(한도내)
- ③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해 국세청에 환급 신청

<적용 시기> '08.10.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

※ 지원대상자(약 260만명)에 대한 카드발급 준비기간 고려

4. 난방유 유류세 동절기 한시적 인하(개소령 §2의2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절기 난방유 세율 인하 ○ 지원 내용 : 등유, 프로판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(30% 인하) 적용 ○ 지원기간 : '08.1~3월	<input type="checkbox"/> 금년 동절기 재추진 ○ 지원내용 : 좌동 - 등유 : 90원/ℓ → 63원/ℓ - 프로판 : 20원/kg → 14원/kg - 취사·난방용 LNG : 60원/kg → 42원/kg ○ 지원기간 : '08.12월 ~ '09.2월

<개정 이유>

- 난방유 유류세 인하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'08년 최초 도입(고유가종합대책, '07.11.13)
-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도 재추진 필요

<적용 방법>

- 등유, 프로판,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(30% 인하) 적용

<적용 시기> '08.12~'09.2(3개월)

5.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25의2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○ 대상 시설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- 증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·등유·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- 절수설비 - 신·재생에너지 생산시설 ○ 세액공제율 : 10% ○ 일몰기간 : 2008.12.31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확대 ○ 대상 시설 : 좌동 ○ 세액공제율 : 20% ○ 일몰기간 : 2009.12.31

<개정 이유>

○ 고유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필요

○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 방안

* 개인 자영업자는 유가환급금 지급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병행 지원

※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사례

- 일본 : 에너지사용 합리화인정설비 취득가액의 7% 세액 공제(04.1~09.3)
- 독일 : 에너지절약 설비의 특별상각 허용(10%씩 10년에 걸쳐 상각)
- 미국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10~35%세액공제 부여(州정부)

<적용 시기> 공포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

II. 향후 추진 일정

개정대상 법령

- 조특법
- 교통에너지환경세법
- 지방세법
-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추진 일정 :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 제출

※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'08.11월중 개정

지원 규모 : 7.1조원(08년 : 3조원, 09년 4.1조원)

※ 기존 지원규모(2.0조원)를 제외할 경우 지원 규모는 5.1조원

Ⅲ . Q&A

①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판정 기준

□ 2007년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급

- 가족 수,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별로 적용
- 총급여(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) 기준
-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자(면세자)에게도 동일하게 적용

※ 근로자 4인가족 면세점 : 1,646만원

②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자영업자 판정 기준

□ 2007년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 자영업자
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
- 가족 수,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별로 적용
- 종합소득금액(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) 기준
-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자(면세자)에게도 동일하게 적용
 - ※ 자영업자 4인가족 면세점 : 562만원
- 유가보조금, 대중교통·물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화물차 등은 제외

③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·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인지?

-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·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됨
 -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였다라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되며
 - 이 경우, 사업자등록시점부터 '09.6월까지의 사업기간분에 대해 영업월수만큼 유가환급금을 지급함
-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최소한의 협력의무
 - 미등록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환급 문제 발생 가능

④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수혜대상 해당 여부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하는지?
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(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)에만 총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하고,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
 - 따라서,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

<사례>

- 납세자 A의 소득형태('07년)
 - 근로소득(총급여) : 3,000만원
 - 사업소득금액 : 1,000만원
 - 수혜대상 판정 소득금액
 - ① 근로소득(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) : 1,775만원
 - ② 사업소득금액 : 1,000만원
 - ③ 합계(종합소득금액) : 2,775만원
- ⇒ 본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을 넘으므로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⑤ 유가환급금 관련 개별 계산사례

【CASE 1】

'07년 총급여가 3,700만원이고, '08년 총급여가 3,0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나?

-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(근로자 : 총급여, 자영업자 : 종합소득금액)은 '07년 기준으로 판단
 -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'07년 총급여가 지급대상기준이 되는 총급여 3,600만원을 넘으므로 수혜대상이 아님

【CASE 2】

'07년 총급여가 3,100만원이고, '08년 총급여가 3,8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나?

-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(근로자 : 총급여, 자영업자 : 종합소득금액)은 '07년 기준으로 판단
 -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'07년 총급여가 3,000만원 ~ 3,20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연간 유가환급금은 18만원이 됨

【CASE 3】

甲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'07년 총급여가 3,0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로서 '08.7~'09.6월 기간중 계속 근로('08년 총급여 3,700만원)한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?

소득기준 충족여부

-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은 '07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외 여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바

- ① 근로소득(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) : 1,775만원
- ② 기타소득금액 : 500만원
- ③ 합계(종합소득금액) : 2,275만원

⇒ 본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,260만원 이상 2,400만원 이하이므로 연 6만원 지급대상

근무월수

- 근무월수는 '08.7~'09.6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甲의 경우 동 기간중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무월수는 12개월

환급금액

- 6만원 × 12개월 / 12개월 = 6만원

【CASE 4】

乙은 자영업자로서 '07년('07.1.1~'07.12.31) 종합소득금액이 2,200만원이고, '08년 9. 11일에 폐업('08년 종합소득금액 3,000만원)한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?

소득기준 충족여부

○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은 '07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자영업자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바

- 乙의 '07년 종합소득금액은 2,200만원이므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2,130만원 초과 2,260만원 이하이므로 유가환급금 대상금액은 12만원이 됨

영업월수

○ 영업월수는 '08.7.1~'09.6.30. 기준으로 "역(曆)"에 따라 계산하므로 乙의 '08년 영업월수는 2개월임

* "역"에 따라 계산한 9월 영업월수는 11일(9.1~9.11)이므로 15일에 미달하여 없는 것으로 봄

유가 환급금액

○ 유가 환급금액은 12만원 × 2개월 / 12개월 = 2만원이 됨

⑥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·경승합차·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보유자는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지?

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·경승합차·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가 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

○ 따라서, 최대 34만원(유류세 환급 10만원 + 유가 환급금 24만원)까지 지원받게 됨

⑦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

1. 유가환급금 지급시기

① 근로자 :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

- 금년 하반기분 : '08.9월 신청, 10월 지급
- '09년 상반기분 : '09.3월 신청, 4월 지급
-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'08.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

② 자영업자 :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

- 금년 하반기분 : '08.11월 신청, 12월 지급
- '09년 상반기분 : '09.5월 신청, 6월 지급

2. 환급 신청 및 절차

① (근로자)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('08.9월, '09.3월),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

-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

* 신청서 기재사항 : 근로자명, 주민등록번호, '07년 총급여액, 계좌번호, e-mail, 연락처 등

② (자영업자)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('08.11월, '09.5월),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

-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

⑧ 사업용 차량·농어민 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?

① 지급방법 :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

① 화물차·버스·연안화물선 : 기존 방식과 동일

- (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)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결제시 환급금만큼 제외된 금액이 청구
- (사후환급 방식) 유류구매내역,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 (화물차·버스) 또는 해운항만청(연안화물선)에 신청 및 지급

② 농·어민 : 지역별 농·수협을 통해 지급

② 지급시기

- (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) 카드 결제일에 지급
- (사후환급방식) 매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

⑨ 기준가격 및 환급금 상한선 설정 근거

1 기준가격(1,800원/ℓ) 설정 근거

- 기준가격은 '08.5월 평균가격(1,768원/ℓ)과 5월 4주 평균 가격(1,877원/ℓ)을 감안하여 결정

2 환급금 상한선 설정근거

① 설정 근거

- 경유에 대한 유류세 총액(476원/ℓ)을 한도로 하여 환급금 상한선 설정
- 단, 농어민의 경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환급금 상한선을 다소 상향 조정

② 보조금 상한선의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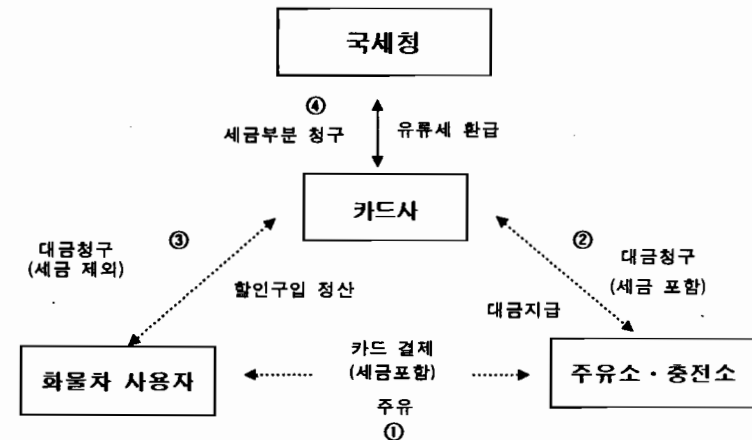
- 경유 유류세액 476원/ℓ(기존 293원/ℓ+ 신규 183원/ℓ)
- 단, 농어민의 경우 659원/ℓ(기존 476원/ℓ+ 신규 183원/ℓ)

⇒ 신규 지원 규모가 같도록 설계

	화물차	버스	연안화물선	농어민	
기존지급액 →	293	293	293	476	659
신규지급액 →	183	183	183	183	

⑩ 1t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

- 1t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
-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발급
-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
- 카드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주유소/충전소에 지급
- 카드사는 환급대상자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
-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



㉑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은 무엇인가 ?
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에너지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
 - 그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이번에 그 공제율을 10%에서 20%로 인상하는 것임

-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은 다음과 같음
 - 에너지 사용효율이 높은 보일러, 요(窯), 로(爐)
 - 전력수요관리설비, 폐기에너지 회수설비
 - 지역 냉난방 사업,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·수송·분배하는 집단 에너지시설
 -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험성분의 제거·분해·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·등유·경유를 생산하는 시설
 - 절수설비
 - 태양력, 풍력, 폐기물에너지 등 신·재생에너지 생산시설
 - 신·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